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

# 대항표현을 위한 선결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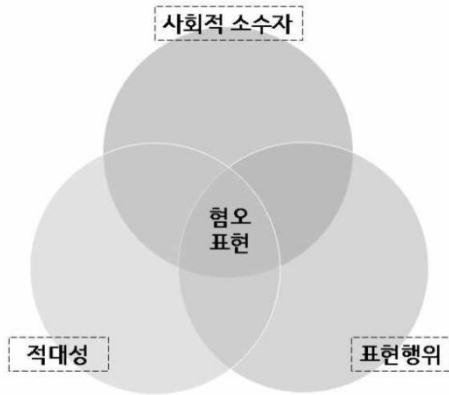
---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 <개념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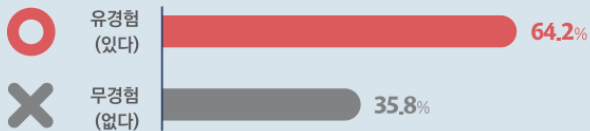
- 어떤 속성을 지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함
-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상집단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전함
- 물리적 공격이 아닌 언어 등을 사용한 언동

# 혐오표현의 양상/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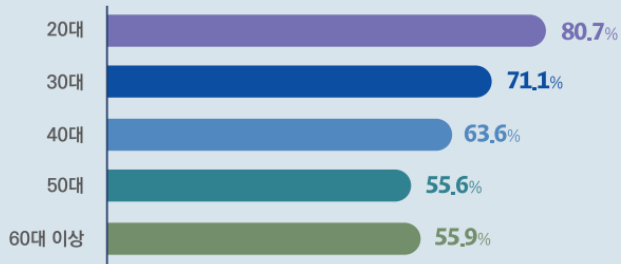
## 혐오표현 경험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이상인 64.2%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표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혐오표현 경험 유무



### 연령별 혐오표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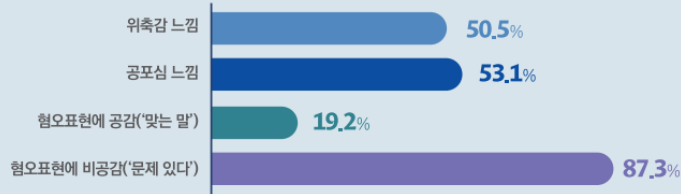


## 혐오표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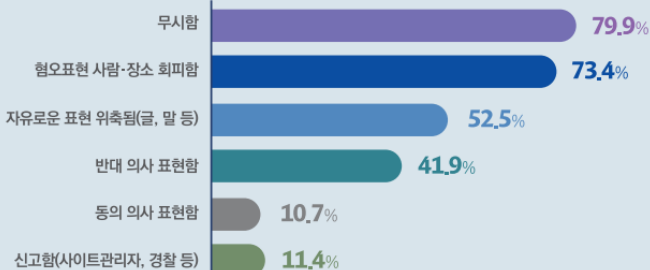
혐오표현을 접한 후 87.3%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공포심(53.1%)이나 위축감(50.5%)을 느낀 사람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반대 의사 표현(41.9%)보다는 그냥 무시하거나(79.9%), 혐오표현 발생장소나 사용자를 피하는(73.4%) 등 주로 소극적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혐오표현 영향

국민·의식



국민·의향



# 혐오표현 대응 - 법적 규제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 <유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체결국은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 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 혐오표현 대응 - 국내 입법 동향

법안	내용
<p>형법일부개정법률안(안 효대의원 대표발의, 2013.6.20.)</p>	<p>제311조의2(혐오)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312條(告訴와 被害者の 意思) ①제308조, 제311조 및 제311조의2의 罪는 告訴가 있어 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혐오표현규제법안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2018. 2. 13.)</p>	<p>이 법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해악을 야기 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규정 - 국가인권위 시정명령 -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p>
<p>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용기의원 대 표발의, 2020. 8. 7.)</p>	<p>공공연하게 상대방을 혐오·차별하거나 혐오·차별을 선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p>
<p>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2021. 1. 5. 일부개정)</p>	<p>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p>

## ❖ 법적 규제의 요청

혐오표현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 학살의 선동으로 나아갈 때,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혐오표현, 괴롭힘이 노동권, 교육권의 침해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수록 법적인 규제가 요구된다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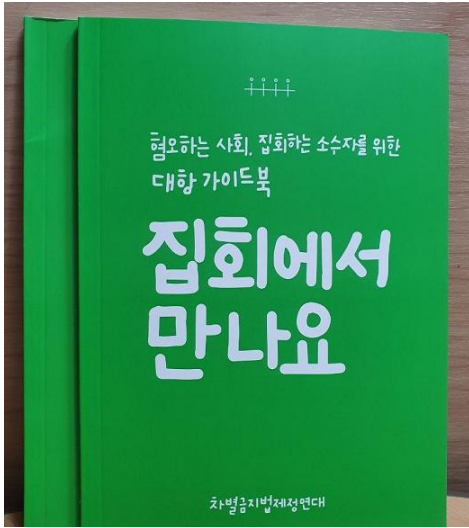
## ❖ 법적 규제의 한계

- 법의 한정적 문언에서 혐오표현의 유형·전달매체·성질·발화자의 지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어렵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표현을 억제할 우려가 있음
- 형벌 조항의 한계, 형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적 표현들이 가능, 처벌되지 않음이 오히려 혐오표현을 정당화하는 효과
- 법적 규제는 사후적, 소극적 규제, 실효성의 한계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더 많은 표현, 더 좋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b>대항적 말하기(Counter Narrative)</b>	<b>대안적 말하기(Alternative Narrative)</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혐오선동세력이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에 정면으로 맞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li><li>• 비교적 소규모로 짧은 시간 안에 혐오표현이 기대고 있는 권위와 토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li><li>• 즉각적인 액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 대응하거나 언급하기보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이나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정치적인 논쟁에 영향을 미치려는 말하기</li><li>•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무엇을 위하여'에 초점을 둠.</li><li>• 광범위한 프로젝트에서 장시간 동안 실시</li></ul>



## #질문하기

서울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선전물을 나눠주는데 한 중년여성이 “이건 동성애 찬성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된다고” 따졌습니다. 활동가는 “왜 말이 안 되 나요?” 하고 되물었고, 상대는 “당신은 아들이 남자를 머느리라며 데려오면 좋겠느냐”고 다시 따졌습니다. 활동가가 “네, 저는 좋아요. 당신은 왜 안 된다고 생각 하나요?” 하고 되물자, 쫓쫓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 2017년 추석맞이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합동선전전 참가자 후기

## #규정하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시청광장 입구로 들어가려는 장애인(휠체어 이용자)을 향해 입구 옆에서 혐오선동 피켓을 든 무리 중 한 명이 “몸도 불편한데 여기까지 나오냐”며 시비를 걸었다. 그는 “저는 광장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그건 장애인을 차별하는 말입니다. 차별하지 마세요.”라고 응수했다.

- 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자의 후기 중

## #비틀기

우리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 그러나 우리들은 임신을 강요받지요  
남자들은 콘돔을 하기 싫다 하지만 / 우리가 임신을 하면 도망을 가고  
낙태를 한다면 살인마라고 하네 / 우리에게 임신 거부 결정권을 내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 / 낙태죄 없애고 꽃길만 걷자

- 2016년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개사곡 “우리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 1. 혐오와 차별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

- 혐오표현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  
: 단순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의 표출,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 혐오'는 단순한 편견과는 다르며, 반드시 차별적이어야 한다.' (아티클 19 혐오표현 해설)
- 혐오표현을 만드는 차별적 구조, 대항표현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할 때  
: 대항적 표현을 이유로 한 또 다른 혐오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나이 비하적 조롱)  
대항적 표현을 이유로 한 정상성의 강화 (김대중과 아인슈타인도 난민 이었다)

## 2. 소수자들의 말이 들릴 수 있는 사회적 구조

많은 장애인 성폭력예방교육과 인권교육 매뉴얼엔 “이럴땐 이렇게 말해요” “싫다고 얘기해요.” “크게 소리쳐요” “내 감정을 표현해요”라고 쓰여져 있다. 그러나 이때의 발화는 약자로서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가해자에 맞서는 상황에 국한된 것이지 일상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상상하고 있지 않다. 피해를 이야기할 때도 침묵하거나 비발달장애인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발화하는 발달장애여성의 언어는 이해받기 어렵다.

난민인권을 향한 대항적 말하기에는 필연적으로 안전한 장소의 점유에 대한 고민을 수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해 전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확인받아야하는 아이러니와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인정자 어느 체류지위를 막론하고 인간이 살기위해 최소한의 전제가 되어야할 생존권마저도 가로막혀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잠식하는 토대가 된다.... 대항적 말하기가 불가능한 요인과 대항적 말하기 이후의 위험요인들을 추적하고 이를 제거할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장소를 점유할 것인가? 어떻게 장소를 점유할 것인가? 또 안전한 장소의 점유 목적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은 거듭 필요할 것이다.

## 3.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 표현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

- 혐오표현의 해악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무조건적인 중립, 불개입은 답이 될 수 없음
- 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소수자들이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층위의 개입이 요구됨. 가령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음
  -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및 지원
  - 차별적 구조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개선
  - 국가 차원에서의 대항 표현
  -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리고 대항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홍보

- 차별에 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
-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구제책을 마련하는 법
- 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통합적인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

## 법안의 개요

### 제1장 총칙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의무

###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 제4장 차별의 구제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직접차별)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간접차별)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괴롭힘)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차별표시조장 광고)
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복합차별)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3. 제1호의 차별시정정책의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훈련, 홍보 등의 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주요 시책

**제8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 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제6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마치며 : 반차별운동, 더 많은 표현을 위한 연대



---

감사합니다

---